



2027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Q&A

【재직경찰관용】



★ 2027학년도 변경 ★

Q [객관평가 수상실적] 수상실적 점수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?

A - 2027학년도부터 '최근 3년간의 수상실적'이 '**최근 2년간의 객관 근평 점수**'로 변경되었습니다. 본인의 객관 근평 점수(2024, 2025)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.

▶ 객관 근평(근무성적 평정) 점수

※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(별표1)

항목	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	포상	교육훈련	근무태도	계
점수	6	9	13	2	30

응시 자격

Q 이수학점과 성적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가요?

A - 이수학점 기준과 전적대학 백분위 성적 평균 80%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.

Q 대학을 휴학 중인 경우에도 편입학 응시 가능한가요?

A - 응시 자격을 충족하였으면 응시 가능합니다.

Q 학사학위 취득자도 지원 가능한가요?

A - 학력기준(2학년 4학기 이상)은 충족, 성적기준(80점)만 충족하면 지원가능합니다.

Q 전적대학에서 미복학으로 제적이 되었는데 응시 가능한가요?

A - 응시 자격을 충족하였으면 응시 가능합니다. 미등록·미복학·자퇴 동일합니다.

Q 출신학교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가요?

A - 지역·출신학교 등은 모집상황에 반영하지 않습니다.

Q 편입학 응시연령 기준은 재직경찰관에게도 적용되는가요?

A - 「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17조의2(편입학 등)에 따라 전형 구분과 무관하게 동일한 입학연령 기준을 적용받습니다.

Q '27학년도 편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근무경력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?

A - '26. 12. 31. 기준 역산하여 실근무 3년 이상인 경찰공무원(시보기간 포함)은 응시 가능
- 휴직 등 사유로 실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됩니다.

Q 근무경력에서 제외하는 기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?

A - 경찰관으로 실제 근무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근무기간에 포함	근무기간에 미포함
시보기간	군경력 등 유사경력
재임용 전 근무기간	휴직(공무상 질병휴직 제외)
감봉이하(감봉이하의 실제 업무 종사)	강등 및 정직기간

Q 재직경찰관은 일반대학생 전형에 응시할 수 있나요?

A - 응시할 수 없습니다. 이미 발표된 편입학 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재직경찰관은 일반대학생 전형으로 응시할 수 없으며, 재직경찰관 신분으로 일반대학생 전형으로 응시한 것이 확인되면 불합격 및 입학취소 됩니다.

Q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의 경우 일반대학생 전형 응시가 가능한가요?

A - 임용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임용 전인 교육생은 일반대학생 전형으로 응시 가능합니다.
- 원서접수 이후 임용이 되었다면 최종합격시 의원면직을 하여야 입학이 가능합니다.

이수 학점 등

Q 학점 관련 선수과목 지정 여부 및 특정 전공, 교양 등 미인정 과목이 있는가요?

A - 이수한 모든 과목의 학점을 인정합니다.

Q 전적대학 수료요건이 경찰대학 응시자격(63학점 이수)과 다른 경우에는?

[예시] 전적대학의 2학년 4학기 수료요건이 70학점 이상인데 2년간 63학점만 이수한 경우

A - 63학점 이상과 전적대학의 학칙에 따른 **2학년 수료요건(70학점 이상)까지 동시에 충족**해야 합니다. 위 예시에 해당하는 학생은 편입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Q 3년제 전문대학에서 2년을 수료한 경우 응시자격을 충족하는가요?

A - 전문대학은 **전문학사를 취득**하거나 **취득 예정**이면 응시 가능합니다.

Q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학점만으로는 70학점이 안되고,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것 중 일부를 인정받은 학점까지 합해야 70학점이 됩니다. 응시할 수 있나요?

A - 전적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의 양과 상관없이, **학점은행제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에 70학점이상이 기재된다면 응시** 가능합니다.

- 다만, 전적대학 성적을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대학 이수학점과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학점을 **임의로 합산**할 수는 없습니다.

Q A대학 1년 2학기 수료 후, B대학 2학년으로 편입하여 총 2학년 4학기 63학점을 이수한 경우 응시자격을 충족하는가요?

A - B대학에서 2학년 4학기를 수료하였다면 응시 가능합니다.

- 다만, A대학과 B대학 각각의 성적 평균 80점 이상을 요구합니다.

Q 아직 2학년 수료가 되지 않았는데, 응시 가능한가요? 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?

A - 2학년 4학기 수료예정자도 응시 가능하며 **수료예정증명서**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.

- 현 소속대학에서 수료예정증명서 미발급 시 재학증명서, 휴학증명서, 제적증명서 중 1부와 함께 경찰대학 홈페이지에서 '수료예정확인서'를 출력, 직인을 받아 제출바랍니다.

전적대학 성적 등

Q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 합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
A -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각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의 백분위 환산점수로 판단합니다.

Q 전적대학 성적평균에 따라 선발과정에서 유불리가 있는가요?

A - 성적에 따른 유불리는 없습니다.

Q 성적(80점) 기준일이 언제인가요?

A -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한 최종학기 성적으로 반영합니다.

- 단, 예외적으로 **학력 예정자**는(2학년 4학기, 전문학사 졸업, 학점은행제 70학점) 지원 시 성적이 80점이 되지 않아도 학력 증명서와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은 가능하나, 추후 최종 학력·성적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학기 성적이 응시자격(80점)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됩니다.

Q 전적대학에서 3학년까지 다녔는데 2학년 4학기까지의 성적평균 80점이 되는데 3학년까지의 성적을 합하면 80점이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
2학년 4학기까지의 성적으로만 응시할 수 없나요?

A - 최종학기를 포함한 전체학년 평점평균이 기재된 증명서를 통해 성적을 확인하므로 이수한 최종학기까지의 성적평균 80점이 되지 않는다면 응시자격이 되지 않습니다.

Q 외국대학의 학점 기준과 성적증명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요?

A - 외국대학도 국내대학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, 성적증명은 100점 만점 환산기준 GPA(Grade Point Average)를 제출하면 됩니다.

- 단, 성적이 백분율로 환산이 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경찰대학 편입생 선발 사정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.

학점은행제 등

Q 학점은행제 학사 기준 70학점은 언제 취득한 것까지 인정하나요?

- A** – 2026년 10월 학점인정 신청 기간에 등록한 학점까지 인정됩니다.
- 따라서 원서접수 시 70학점이 되지 않고, 수업을 듣는 중이라면 현재까지 이수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받은 학점인정증명서와 해당 교육원에서 수강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10월 학점인정 신청 기간에 70학점을 취득 예정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지원 자격을 인정합니다.

Q 학위를 취득하였으나, 성적평균 80점이 되지 않아 학점은행제에서 추가 이수하여 합산 성적평균이 80점 이상 되었습니다.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나요?

- A** – 전적대학과 학점은행제 각각 성적평균 80점 이상을 요구합니다.
- 전적대학과 학점은행제 성적 중 어느 하나라도 80점 미만이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.

Q 전적대학을 자퇴 후 전적대학 학점을 학점은행제에 등록하였으나, 학점은행제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도 70학점 이상이 됩니다. 이런 경우에도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?

- A** – 학점은행제에 전적대학의 학점을 등록하여 일부라도 인정받았다면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전적대학과 학점은행제 각각 성적평균 80점 이상을 요구하며 전적대학과 학점은행제 성적 중 어느 하나라도 80점 미만이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.

Q 전적대학 1개 학년 수료 후 전적대학 학점을 학점은행제에 등록하지 않고, 학점은행제로만 최종 70학점을 인정받았습니다. 서류는 전적대학 것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?

- A** – 학점은행제 최종성적증명서만으로 70학점 인정받았으니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.

Q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은 언제 취득한 것까지 인정하나요?

A - 원서접수 마감일(2026. 8. 24.)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됩니다.
- 따라서 원서접수시 70학점이 되지 않고, 취득한 자격증을 학점으로 등록할 예정이라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받은 학점인정증명서와 자격증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10월 학점인정 신청 기간에 70학점을 취득 예정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지원자격을 인정합니다.

Q 학점은행제에서 독학사, 자격증으로 학점 일부를 취득한 경우 성적은 어떻게 반영되나요?

A - 독학사 과정별 시험 합격 및 자격증의 경우 **합격 여부만 확인하여 학점인정**을 하므로 성적증명서에는 이에 대한 성적이 기재되지 않고, 학점으로만 인정하며 나머지 산출된 성적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.

Q 학점은행제에서 독학사, 자격증만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

A - 독학사, 자격증만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적 요건 (80점)에 관계없이 **지원가능합니다.**

Q 학점은행제 70학점은 전문학사도 해당하나요?

A - 모집요강 응시자격의 세부 학력 기준과 같이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과정은 70학점이 아닌 **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만** 지원이 가능합니다.

Q 독학사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편입학 응시 가능한가요?

A - 독학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, **최종 성적 평균 80점 이상**을 요구합니다.

Q 독학사 시험 결과발표 전인데도 학점 반영이 되나요?

A - 원서접수 마감일(2026. 8. 24.)까지 **합격 여부가 발표된 경우에 한하여** 인정합니다.
- 따라서 원서접수시 70학점이 되지 않고, 독학사 합격 학점을 등록 예정이라면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받은 학점인정증명서와 독학사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10월 학점인정 신청 기간에 70학점을 취득 예정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지원자격을 인정합니다.

영어성적

Q 영어성적을 등록하는 이유는?

- A**
- 영어성적 인정범위를 입학년도 기준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('27학년도 기준 '24. 1. 1. 이후) 기준점수가 확인된 정기시험만 인정
 - 유효기간이 2년인 영어시험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.

※ 진위 여부 확인이 되지 않는 영어성적은 불인정함

- 따라서,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사전등록해야 합니다.

Q 2년이 경과 한 영어성적의 경우 사전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- A**
- 2024. 1. 1.부터 2024. 8. 24.까지의 영어성적은 원서접수 마감 후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경찰청에 사전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- 2024. 8. 25.부터 2024. 9. 1.까지의 성적은 진위여부 확인과정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.(사전등록하지 않았다면 원서 접수 시에 입력 불가)

Q 정기시험의 인정범위는?

- A**
- 응시일 기준입니다. 응시일이 '24. 1. 1. 이후의 성적만 인정합니다. 예를 들어 응시일이 '23. 12. 31.이고 성적취득일이 '24. 1. 10.인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Q 정기시험이 아닌 경찰청 시행 특별시험을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?

- A**
-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특별시험의 경우 공인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한국토익 위원회와 협력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공인토익시험과 동일하게 YBM에서 시험문제를 제공하며 공인시험과 문제형식·난이도 등에 전혀 차이가 없는 시험입니다.
 - 경찰청에서는 승진 시 가점 인정, 경찰청 주관 해외파견자 선발 시 어학요건 인정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편입학 재직경찰관 전형에서도 인정합니다.
 - 원서접수 시 '경찰청 특별시험'에 체크한 후 2024. 9. 1. 이후 취득한 점수를 입력하고 해당 성적표를 첨부하면 됩니다.

※ 단, 경찰청 특별시험의 경우 사전등록이 되지 않고, 2년이 경과한 성적은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2024. 9. 1.이후 취득한 성적만 인정

결격사유

Q 재직기간 '26. 12. 31. 기준 역산 3년의 기준은 언제부터인가요?

A - 2024. 1. 2. 이후 임용자부터는 최소 실 근무연수 3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.
※ 휴직·징계 등 미근무기간 없이 실근무경력을 충족하였을 경우 2024. 1. 1. 임용자까지 가능

Q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?

A - 징계 관련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
구 분	2025. 8. 23. 이전 징계 종료	2025. 8. 24. 이후 징계 종료
응시 가능 여부	가능	불가(결격)

- 징계 계류 중인 경우는 응시는 제한되지 않지만, 응시 후 입학 전까지 징계가 결정이 되거나 징계를 이유로 의원면직이 제한되어 경찰대학 입학일 전일까지 퇴직할 수 없다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Q 재직경찰관 결격사유인 '최근 3년간' 치안성과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A - '27학년도 편입 기준 '23년부터 '25년까지 치안성과평가 2회 이상 최하위(C) 등급을 받은 경우 결격 처리됩니다.
- 부서 성과는 상관없이 개인성과만 평가합니다.

Q '23년 성과평가 없음, '24년 C등급, '25년 B등급으로 원서접수 후 '26년 C등급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?

A -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 후에 C등급을 받은 것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

Q 휴직 등의 사유로 최근 3년간 치안성과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?

A - 치안성과평가 결과가 없으면 T등급을 부여하므로,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.

시·도경찰청 추천

Q [추천인원수]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?



- 최종합격 인원의 7배수인 175명입니다.

* 총 추천인원 175명의 각 시·도경찰청별 배정인원은 경찰청에서 별도 공지 예정

Q [객관평가] 객관평가 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?(모집요강 8페이지 참조)



1. 2027학년도 기준 최근 2년간의 객관 근평 점수는 2024년, 2025년의 객관근평점수를 합산하여 2로 나눈 점수로 반영되며 **최대 30점**입니다.

- '24년 28점, '25년 25점일 경우, 응시자의 객관근평점수는 $(28+25)/2=26.5$ 점입니다.

2. 치안종합성과평가는 2023년, 2024년, 2025년의 점수를 합산하여 3으로 나눈 점수로 반영되며 **최대 20점**입니다.

- '23년 S(20점), '24년 B(16점), '25년 C(14점)일 경우, 응시자의 치안종합성과평가의 점수는 $(20+16+14)/3=16.67$ 점(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)

3. 영어성적은 2024. 1. 1. 이후 획득한 영어능력시험 중 최고점 하나만 입력 하고(중복 입력 불가) 환산된 점수로 반영되며 **최대 30점** 만점입니다.

- 토익 700점과 지텔프 75점을 보유한 응시자는 점수가 높은 지텔프의 점수만 입력

■ **객관평가점수 만점은 80점이며 1,2,3을 합한 점수가 응시자의 객관평가점수입니다.**

※ 위 예시 응시자의 최종 객관평가점수는 $26.5(\text{근평})+16.67(\text{치안성과})+24(\text{영어}) = 67.17\text{점}$ 임

Q [객관근평점수] 객관근평점수가 없는 경우가 있나요?(승진업무 처리지침 근무기간 산정기준)



근무기간 제외	근무기간 非 제외
▶ 휴직기간 ▶ 교육훈련 파견 ▶ 강등·정직·직위해제 처분기간 ▶ 당해 휴가(연가·병가·특별휴가 등)를 연속해서 30일 이상 실시한 경우 그 기간 전부 ▶ 평정기준일 현재 계급보다 하위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	▶ 당해 휴가(연가·병가·특별휴가 등)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기간 전부 ▶ 평정기준일 현재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

- 승진·휴직·파견 등으로 당해연도(전년도 11월1일부터 평정연도 10월31일까지)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경우 평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평점수가 없습니다.

Q [객관근평점수] 객관근평점수가 없는 경우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요?

- A** - 평정점이 없는 경우 이전년도 최근 객관점수를 반영(객관점수가 1회만 있는 경우 중복 반영)합니다.
 - 다만 승진, 휴직 등으로 평정년도에 근무기간이 월단위 12개월 미만(11개월 이하)자(위 승진업무 처리지침 근무기간 산정기준표에 따름)는 없는 것으로 보아 같은 방식으로 반영*합니다.
 ※ 단, 당해 연도 근평이 상정한 평정점 보다 높은 경우 높은 점수로 반영

Q [객관근평점수] 위와 같이 객관근평점수가 없는 경우의 입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A** - ① 평정점이 없는 연도는 전년도 평정점입력 ② 평정점이 있지만 휴직, 승진 등의 사유로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년도 평정점 또는 실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입력합니다.

유형	2024년 점수	2025년 점수	최종 반영
A (25년 객관X)	2024년 객관근평	2023년 객관근평	(24년 + 23년) ÷ 2
B (24년 객관X)	2023년 객관근평	2025년 객관근평	(23년 + 25년) ÷ 2
C (25년 점수존재, but 12개월 미만 근무)	2024년 객관근평	2023년 점수 or 2025년 점수 중 높은 점수 입력	(24년 + 23년 또는 25년 점수) ÷ 2

[사례 1 : '22. 11. 1. 입직한 자가 '25. 6. 15.에 승진한 경우] : 25년 점수 부존재

- '25년도 근평은 '23년 평정점 입력

구 분	'23년	'24년	'25년
근무성적	29	28	없음
입력점수	29	28	29

[사례 2 : '22. 11. 1. 입직한 자가 '24. 4. 1.에 승진한 경우] : 24년 점수가 있지만 승진으로 인해 평정기간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이므로 없다고 봄

- 이 때, '24년 평정점은 '23년 평정점 또는 '24년 평정점 중 높은 점수를 입력

구 분	'23년	'24년	'25년
근무성적	28	26	27
입력점수	28	28	27

[사례 3 : '22. 11. 1. 입직한 자가 '24. 6. 1. 승진하고 '25. 8. 1.~10.1.(2개월) 휴직한 경우]
 : 24년 점수 부존재, 25년은 점수 존재하나 평정기간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이므로 없다고 봄

i) '24년도 근평은 '23년점수 입력

구 분	'23년	'24년
근무성적	27	없음
입력점수	27	27

ii) '25년도 근평은 '23년 점수와 "25년 점수중 높은 점수 입력

구 분	'23년	'24년	'25년
근무성적	27	26	28
평 정 점	27	27	28

원서접수

Q 원서접수 전형료는 어떻게 되나요?(모집요강 5페이지 참조)



전형	단계별	전형료	비고
일반대학생	필기시험	50,000원	응시인원 전체
재직경찰관	1단계(객관평가)	10,000원	응시인원 전체
	2단계(필기시험)	40,000원	추천인원 175명

- 재직경찰관의 경우 원서접수 시 1단계 전형료만 납부하고, 필기시험 대상자로 선정된 175명만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합니다.

※ 2단계 전형료 납부방법 및 결제사이트는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에정(재직경찰관 추천자 발표 (‘26. 10. 2)이후) 2단계 전형료를 정한 기간 내에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응시 불가

Q [원서접수 시] 작성 및 업로드 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?(모집요강 6페이지 참조)



1. 학업계획서 : 원서접수 기간 내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
2. 온라인 업로드 서류 : 원서접수 후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스캔 후 파일명에 맞게 업로드
 - 일반대학생 : 학력증명서, 성적증명서
 - 재직경찰관 : 학력증명서, 성적증명서, 영어성적표

Q [원서접수 후] 제출하여야 하는 편입학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?(모집요강 9페이지 참조)



1. 재직경찰관 편입학 평가자료부* : 원서접수 완료 후 ‘나의 원서관리’페이지에서 출력
 - * 응시자가 원서접수 시에 입력한 객관평가를 하나의 표로 만든 것.
2. 학업계획서 :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작성, 결제 후 ‘나의 원서관리’페이지에서 출력
3. 근무경력 : 1) e-사람 나의이력→인사정보→임용사항 전체 화면 우클릭→‘인쇄’하여 제출(임용사항 ‘출력’이 아님)
 - 2) e-사람 나의이력→휴직관리→휴직정보 전체 화면 우클릭→‘인쇄’하여 제출
4. 객관근평 : 1) 교육훈련(13점) : 교육포털→나의강의실→나의직장훈련→2024년,2025년도 전체 화면 ‘캡처’ 하여 ‘인쇄’제출
 - 2) 포상(9점) : e-사람 나의이력→인사정보→포상/장려장/징계→전체 화면 우클릭→‘인쇄’하여 제출(포상, 장려장사항이 많은 경우 페이지 넘겨 모두 인쇄)

※ 기여도(6점)+근무태도(2점)가 포함된 최종 객관근평점수는 인사부서에서 시스템으로 확인

5. 치안성과 : 경찰청 치안성과관리시스템→나의직무성과→개인성과→전체 화면 우클릭→‘인쇄’하여 제출
6. 공인 영어성적표 : 원서접수시 업로드한 서류 원본
7. 학력증명서, 성적증명서: 원서접수시 업로드한 서류 원본

※ 학력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온라인발급, 무인자동화기계 권장

Q 편입학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A - 원서접수 후 2026. 8. 28.(금)까지 편입학 증빙서류를 소속 경무기능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서접수 하더라도 객관평가 검증이 불가하여 **객관평가대상에서 제외**됩니다.

Q 응시자가 입력한 객관평가가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A - 소속 기관에서 객관평가 점수 검증하여 응시자 본인 확인 후 최종 검증(수정)된 객관평가 점수가 시도청에 제출됩니다.

- 검증과정에서 고의 허위 입력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객관평가 입력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 원서접수 전 반드시 경찰대학 인재선발계 또는 소속 경무기능에 정확히 확인 후 접수 바랍니다.

Q 응시번호는 언제 부여되나요?

A - 원서접수 후 부여되는 번호는 접수번호입니다.

- 응시번호는 시험을 볼 때 필요한 번호로 원서접수 마감 후 부여되며 '26. 10. 16. 10:00 이후 응시표 출력과 응시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.

입학사정

Q 1차 시험에서 3배수 안에 들면 신체·적성·체력검사 및 면접에 모두 참여하는가요?

A - 1차 시험에서 3배수 안에 선발될 경우 모든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.

- 신체검사는 합격·불합격 결정합니다.
- 체력검사는 최종사정에 20% 반영되며, 순환식 체력검사 기준 미달 시 불합격처리됩니다.
- 적성검사는 합격·불합격이 없으며,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(경찰공무원 채용과 동일)합니다.

Q 신체·적성·체력검사는 채용 때 실시했는데 또 해야하는가요?

A - 일반대학생 전형과 같이 편입학 전형 선발의 모든 절차에 예외없이 참여합니다.

Q 면접 방식과 예시문항이 있는가요?

A - 면접은 3가지 평가(인성·적격성 면접, 창의·논리성 면접, 집단토론 면접)로 구성되며, 예시문항은 비공개입니다.

Q 적성검사 평가요소와 반영방법 등이 어떻게 되는가요?

A - 적성검사 항목은 총 3개 검사, 4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- 적성검사는 합격, 불합격이 없으며,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.

Q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A - 최종합격자 결정은 1차 시험 60%, 체력검사 20%, 면접시험 20%를 합산하여,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.

Q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합격자 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A - 동점자가 있는 경우 '1차시험 성적 → 면접시험 성적 → 체력시험 성적'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. 면접시험 성적까지 동점인 경우에는 체력시험의 기록 우수자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.

학적 등

Q 현재 4학년 대학을 휴학한 상태입니다. 편입학에 응시하기 전에 자퇴를 해야 하나요?

A - 동시에 두 대학에 학적이 등록되면 이중 등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 후 학기개시일 이전에 이중등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개별적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.

Q 최종합격한 후 다른 대학에 합격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 - 최종합격하여 이미 등록을 한 후 다른 대학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,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**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**해야 합니다.

Q 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최종 수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A -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, 학위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응시자 중 최종합격자는 입학 전까지 학교에서 **지정한 기한 내에 최종 학력증명서·성적 증명서를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- 합격 후에라도 낙제 또는 졸업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예정되었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.

학교생활 등

Q 편입생들은 행정학과와 법학과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는지?

A - 편입생 전형은 학과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합니다. (신입생도 동일)
- 입학 후 학과 선택 시 학과별 지원자가 모집 전형별 학과 정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집 정원별 입학서열로 결정하며 모집 전형별 학과 정원은 경찰대학 학칙 별표2*와 같습니다.

* 「경찰대학 홈페이지 → 경찰대학 법령집」에서 확인가능

Q 학비, 기숙사비는 어떻게 되나요?

A - 경찰대학생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기숙사비 등은 별도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.

Q 학교 재학 중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?

A -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지급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0 ‘경찰 공무원 등의 봉급표’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

Q 연금관련 기여금을 계속 내야하나요?

A - 경찰대학생은 일반인 신분이므로 재학 기간 중 연금 관련 기여금을 납입하지 않습니다.

Q 경찰대학 재학기간 중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
A - 퇴직 후 편입학하므로 경찰대학 재학 기간 중에는 정근수당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.

Q 재직시에 수사팀 2년과 지구대 1년 근무를 하였더라도 순환보직을 해야 하나요?

A - 「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」 제32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 경위는 필수현장보직 근무를 해야 합니다.

기타

Q 1차 시험일 “공가” 사용 가능한가?

A - 편입학 시험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4항 승진시험, 전직시험 응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“공가”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Q 기존 호봉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?

A -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별표15에 의해 확정합니다.

재임용 계급	현재 계급	호봉 산정
경위	높거나 같은 계급	임용계급의 경력으로 인정
	낮은 계급	임용계급까지 순차적 승진으로 계산

※ 초임호봉 확정은 위 규정 등을 준용하여 산정하나, 경력 등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합격 후 소속기관 인사기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Q 경찰대학 재학 기간의 호봉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?

A -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「경찰대학설치법」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그 교육기간 50%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(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)합니다.
- 편입생의 경우 교육 기간이 2년이므로 1년의 호봉이 합산됩니다.

Q 경찰대학 졸업 후 경위로 신규임용시 초임 호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?

A - 경위 임용 전 「기존 호봉, 재학 기간 등」을 모두 고려하여 초임 호봉이 책정됩니다.

Q 경위 재임용 시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이전 근무 기간이 포함되나요?

A - 정근수당을 위한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이전 근무기간도 포함됩니다.

Q 경찰대학 재학 기간은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포함되나요?

A -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,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경찰대학 재학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Q 임용 후 연가일수 산정시 기존 재직근무경력이 인정되나요?

A -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“재직기간”과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산정되므로 기존 근무경력도 인정됩니다.

Q 퇴직 후 기 납부한 기여금은 어떻게 되나요?

A - 기 납부한 기여금은 의원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은 공무원연금법 제26조에 따라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,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시 받은 퇴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.